

5월 주요 시사

I. 주요시사 핵심내용

II. 시사 파헤치기

I. 주요시사 핵심내용

■ 성 인지 감수성

성 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의 개념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없지만 대체로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넓게는 성평등 의식과 실천 의지 그리고 성 인지력까지의 성 인지적 관점을 모두 포함한다. 즉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말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 낼 대안을 찾아내는 능력까지도 포함한다.

성 인지 감수성은 성범죄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개념은 2018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등장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당시 대법원 제2부는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가 낸 해임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때 판결에서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 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책 마련

서울 금천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동을 맡길 수 있는 건강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집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는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집합교육을 소규모 교육으로 변경해 연 90회 교육을 실시한다. 여기에 어린이집 대상 '아동학대 사전컨설팅'이 신설된다. 기존 5개 분야(재무회계, 설치운영, 서울형, 평가인증, 부모모니터링)에 아동학대 분야가 추가된다. 구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50개소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분야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어린이집 관리체계 개선대책 마련으로 구에 아동학대 사건 발생 자체가 억제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학부모와 아동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게임 중독 질병 지정 여부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는 20일 게임 중독 질병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0일 진행한 여론 조사 결과, '술, 도박, 마약 중독 등과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분류·관리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45.1%)이 '놀이문화에 대한 지나친 규제일 수 있으므로 질병으로 분류하는 데 반대한다'는 응답(36.1%)에 비해 10%p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무응답 및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8.8%였다. 분석 결과 여성과 50대 이상 장·노년층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체로 찬성한 반면 남성과 2030세대에서는 반대여론이 우세했다.

■ 범죄피해자의 인권과 언론보도

최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사건으로 조현병 환자에 의해 행해지는 범죄의 특성과 조현병 환자에 대한 강제적인 치료방법의 허용여부가 다시금 사회적 이슈가 됐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조현병 환자가 범죄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반사회적인 행위를 했을 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대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조현병 환자가 범죄를 행하였을 때 어느 범위까지 그의 인권이 보장받아야 하는가의 문제로 연결됐다.

이처럼 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적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이에 반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는 논의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형사사법제도에서도 피의자의 인권보장은 강조되어왔으나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배려는 미흡했다. 진주사건에서도 피해자와 유족의 신상뿐만 아니라 피해사실, 피해장소에 대한 정보까지 상세하게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이라는 명목하에 피해자, 유족, 피해사실 및 피해장소에 대한 정보들을 상세하게 보도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의 사생활 및 인격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공동으로 '인권보도준칙'을 제정·시행하여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등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여성·아동 대상 폭력사건의 경우에는 관련법에서 특별규정을 두어 피해자의 신원공개 등을 금지함으로써 언론보도에 의한 여성·아동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 레이와 시대

아키히토 일왕이 30일 헤이세이 30년을 뒤로하고 퇴위하고,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했다.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오늘부터 30년간 사용했던 '헤이세이' 대신 '레이와'라는 새 연호를 쓰기 시작했다. 아키히토의 퇴위로 전쟁 체험 세대가 일본 역사에서 상징적인 퇴장을 하게 됐다. 1930년대에 태어나 80대에 이른 이 세대는 평화헌법의 마지막 수호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과 동시대를 산 아키히토 일왕도 평화헌법의 강력한 옹호자였다. 그는 평화헌법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면서, 아베 신조가 추진하는 개헌에 은근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새로 등극하는 일왕인 나루히토는 정치 성향과 헌법관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베 총리의 폭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엔 힘들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 노동절

노동절을 맞아 노동계는 서울에만 4만여명이 모여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기본권 향상에 정부가 나설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국제 노동사회가 우리 정부의 아이엘오 핵심협약 비준 여부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다"며 정부가 '선 비준-후 입법' 조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해고자들과 전국교직원노조 해고자들도 해고자 원직복직과 해직기간 경력 인정을 요구했다. 노동절을 맞아, 배달기사 40여명이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배달기사 노조 '라이더 유니온' 출범 총회를 열었다. 이들은 배달용 오토바이 보험료 현실화, 배달료

현실화, 산업재해 인정 및 유급휴일, 휴일수당 보장, 정부-기업-라이더유니온 3차 단체교섭 등을 요구했다. 총회에 참석한 배달기사들은 배달기사가 영세사업자로 분류돼 산재보험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종합 보험료 인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패스트트랙 합의

여야 4당이 합의한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국회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는 29일 밤 10시 50분께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혁안과 2개의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한국당의 강한 반발과 '사보임 논란' 뒤 바른미래당 내 분열로 인해서 진행되지 않았던 패스트트랙은 29일 권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는 데 여야 4당이 동의하면서 비로소 출발할 수 있었다. 합의는 바른미래당의 깜짝 제안에서 시작됐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표결을 시도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공수처 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태울 것을 제안했고, 이를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수용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졌다.

■ 정신질환자 24시간 응급대응...전문인력 785명 총원

피의자의 조현병 이력이 알려지면서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조현병과 조울증, 재발성 우울증 등 국내 중증정신질환자는 전체 인구의 1%, 약 50만 명이다. 이 가운데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과 복지센터에 등록된 환자는 9만 2천 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을 관리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 우선 조치방안'이 마련됐다. 증상이 심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785명을 앞당겨 총원하기로 했다. 각 광역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24시간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조기 진단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신질환 초기 증상과 간략한 자가검진프로그램을 널리 안내하고...24시간 정신응급대응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위기상태를 평가하고, 안정을 유도하거나 적절한 응급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초기 환자의 집중치료를 뒷받침하고, 소득이 낮은 환자는 증상 발병 후 5년까지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각 지역의 수요를 조사해 정신재활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타인을 위협하거나 자해하는 위험환자는 당사자가 거부하더라도 보호의무자와 지자체장이 입원치료를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데스크톱 컴퓨터와 멀어지는 스마트폰 세대

스마트폰 세대인 요즘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은 데스크톱 컴퓨터를 다루는 데 익숙지 않다. 게임과 채팅 등 컴퓨터로 하는 놀 거리 대부분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피 대상이다. 변화하는 현실에 맞지 않는 초등생 대상의 데스크톱 코딩 수업이 여기에 한몫했다. 또한 스마트폰의 '천지인 재판'에 익숙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퀴터 재판'을 외우지 못해 컴퓨터 타자를 과거 노년층이 했던 방식의 '독수리 타법'으로 치는 학생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과거 중·고교생의 '필수 스펙'이던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응시자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13년 26만 3994명이 응시한 반면에 2017년에는 16만 2557명으로 급감했으며 현재도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의보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인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국내 돼지고기 값도 들쭉이고 있다. 아프리카와 유럽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근 우리와 교류가 잦은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지역에 확산되고 있어 국내 전파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한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적극적인 방역 강화에 나섰다. 높은 치사율과 전염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제 1 종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발생국가 사례를 보면, 감염 원인으로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 또는 야생 멧돼지의 이동과 잔반사료에 의한 감염이 가장 많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오염된 돼지 생산물을 불법 반입할 때 전파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참고자료 : KTV 국민방송>

■ 제3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지난 2017년 잇달아 출범한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K뱅크)와 제2호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한국카카오은행)가 '내 손 안의 24시간 은행'을 표방하며 편리함을 바탕으로 젊은 층을 적극 유치, 총 고객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2019년 5월 제3인터넷전문은행(최대 2곳)이 가세할 예정이다.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을 통해 또 한 번 금융업계에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각 은행들의 디지털 고객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아젠다넷>

II. 시사 파헤치기

■ 인권침해 vs 국민의 알 권리

○ 개요 및 현황

진주 '방화 살인'의 안인득 사건, 조두순 성폭행 사건 등 흉악범의 신상공개에 대한 논란과 사회적으로 민감한 유명 연예인 및 정치인의 범죄사실 공개가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범죄 행위 공개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의 이익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개인의 권리가 더 소중하다는 의견이 대치되는 상황이다.

○ 인권침해 논리

(1) 무정추정의 원칙

형사 피의자와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

- 대한민국헌법 제 27조 4항 :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 307조(증거재판주의)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 피의사실 공표죄-형법 제 126조 :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해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되돌릴 수 없는 사회적 인식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이전으로 되돌아오지 않음. 판결에서는 '무죄'는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닌, 그저 범죄 사실의 증거가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 죄가 없다는 것과 죄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은 뉘앙스 차이가 존재함.

- 대한민국 소송법 제 325조 (무죄의 판결)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 사례 <범죄> : 2006 년 살인·방화 사건의 경우, 용의자의 실명이 공개된 후 무죄판결이 났고, 2012 년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한 언론사에서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의 사진을 게재해 성폭행범으로 오보 발생.

· 사례 <포토라인 논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 시, 검찰 포토 라인이 아닌 대법원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후에 검찰청의 포토라인은 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싱 해버린 사건. 인권침해 이유: 포토라인이 법 규정에 되어있는 건 아님. 살인 사건의 용의자처럼 가해 혐의가 명백한 사람들 말고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포토라인에 서는 경우가 많다. <낙인 찍히는 경우/사회적 낙인>

·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행동의 해외사례 : 포토라인 해외 사례 없음. 예를 들어 미국과 영국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포토라인 자체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 유죄 심증을 강하게 가질 수 있기 때문. 일본의 경우 포토라인 문화가 존재하지만 인터뷰 시도는 허용 안됨 프랑스의 경우, 검찰청사에 공인이 들어갈 때는 멀리서 차 들어가는 것만 찍는 정도 허용.

(3) 2차 피해

범죄자의 얼굴, 나이, 이름 등이 공개됨으로써 그 범죄자의 가족, 지인들의 신상 또한 자연스럽게 노출될 가능성 높음

· 사례 : 동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했던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성호의 얼굴과 신상정보가 공개됨. 얼굴과 신상정보가 공개되자마자 SNS 등을 통해 조 씨의 지인과 친인척, 심지어 헤어진 옛 애인에 대한 개인정보까지 일명 '신상털기'로 2차 피해를 양상.

(4) 범죄 사건의 경우, 인권 존중

헌법 제 10 조의 인격권에 의해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음.

○ 국민의 알 권리 논리

(1) 표현의 자유

헌법은 알 권리에 대한 조항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헌법 21조와 10조를 알권리의 근거 조항으로 보고 있음. 또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한 국민의 당연한 알권리' 주장. 국가에 의무를 다한 만큼 국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제21조>

-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여론 조사(18.10.23~18.10.25) :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의견(N 999, 단위 %) – 반대 2.6 % / 찬성 95.9% (출처: 리얼미터)

· 찬성 이유

- ① 피의자의 재범 방지 위해(47.5%)
- ② 유사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해(19.1%)
- ③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18.0%)
- ④ 범죄에 대한 납득 가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13.5%)
- ⑤ 범죄에 관련된 유언비어를 예방하기 위해(2.0%)

(3) 수사 기관에 대한 신뢰도 저하

위의 통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일부 응답자들은 '범죄에 대한 납득 가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13.5%)'에 신상공개를 주장함. 심지어 국민의 인식 중에는 국민들은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고 의심하여 판사의 성향과 이전 판결들을 들여다 보고 이번 판결을 예측하기까지 함.

(4) 공익을 위한 태도

전직 대통령이나, 유명 정치인에 대한 수사 상황은 공익적 목적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함. 공익적 목적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공정하고 정확한 내용을 발표할 경우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의도 보다는 공익을 위한 행위라고 해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

(5) 수사에 도움

또한 공개 수사는 범인을 검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도 함.

사례 : 강도치사죄로 무기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 탈옥했다가 2년 뒤인 1999년 검거된 신창원 탈옥 및 검거 사건의 경우, 전국적으로 배포된 공개 수배 전단을 본 가스 수리공의 제보로 검거

■ **부유세 도입 찬반 논쟁** (사회복지 지출확대 필요 vs 세금회피, 기업 투자이익 상실)

○ **이슈 배경**

올해 우리 사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서울 집값 차이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체감 차이가 크게 벌어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소득불평등의 심화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유세를 도입해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부유세를 도입하면 재산의 해외도피나 기업의

투자의욕 상실로 인해 경제 활성화가 더디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부유세 도입 찬성 측 논리

첫째, 국가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월드 오브 워크 리포트 2011에 따르면 부유세를 신설하거나 이미 있는 경우 세율을 조금만 올려도 정부 세수의 엄청난 증대가 예상된다. 이 보고서에서 예상된 국가별 부유세 수입 규모는 미국 1조 2000억 달러, 일본 4470억 달러, 중국 3510억 달러, 프랑스 2580억 달러, 독일·이탈리아 2349억 달러 등 여라 나라에서 엄청난 금액의 수치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3%의 부유세만 부과해도 550억 달러(약 66조원)의 추가 세수가 기대된다고 적시했다. 이처럼 부유세를 거두면 국가의 경제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이는 복지, 교육 지원 등 국가의 발전에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부유세로 복지체제를 늘릴 수 있다. 중앙일보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부유세 제도를 도입하였을 때 거둘 수 있는 금액은 약 60조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충분이 많은 것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한겨레가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얻은 결과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 81.3%가 "복지 확대를 위해 최상위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부유세 도입을 반대하는 국민은 18.1%에 불과했으며, 특히 월 소득 401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조차 80.8%가 부유세 도입에 찬성했다. 이처럼 부유세로 충분이 복지체계를 늘릴 수 있고 많은 국민이 부유세를 통해 복지 시설이 늘길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소유한 부 대신 부가 사용되는 목적과 방법에 따라 부유세를 매기면 된다. 본래 '21세기 자본론'의 저자 토마 피케티 교수나 워런 버핏이 주장한 부유세는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과세하는 세금이었다. 그러나 세계에서 제일가는 억만장자인 빌 게이츠가 주장하는 부유세는 약간 다르다. 빌 게이츠의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에 따르면 소유한 부에 대한 과세보다는 부가 사용되는 목적과 방법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것이 불평등 해소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피케티 교수와는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는 블로그에서 두 부류의 부자를 예로 들었는데, "사업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과 기부를 위해 돈을 쓰는 사람, 그리고 요트와 항공기 구매 등 개인적 소비에 돈을 쓰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들 모두 소득 불평등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의 두 사람이 마지막 사람보다 사회 발전에 더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무조건 가진 자산에 따라 부유세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부가 사용되는 목적과 방법에 따라 부유세를 매기면 사회에 기여하는 공헌도가 높아지고 부자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 부유세 도입 반대 측 논리

첫째, 부유세는 전 세계적으로 폐지추세에 있다. 부유세는 1910년 스웨덴이 최초로 도입했다. 하지만 부유세는 지금 폐지추세에 있습니다.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덴마크, 일본, 피케티의 조국인 프랑스 등 부유세를 시행했던 국가들은 이를 폐지 중이다. 심지어 부유세의 원조 국가인 스웨덴조차 이를 폐지하였다. OECD는 아예 부유세의 폐지를 권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아무런 대책 없이 한국에 부유세를 도입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한.

둘째, 부유세는 경제에 문제를 끼칩니다. 스웨덴의 회사 이케아는 부유세를 내다 지쳐 외국에 재단을 세워 회사재단을 모두 기부해버렸다. 부유세 폐지 이전의 스웨덴은 부유세로 걷는 한 해의 세금이 6400억원인데, 외국으로 빠져나간 자본은 200조원이라고 한다. 이처럼 부유세가 도입되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기피하거나 부유세가 없는 이웃경쟁국으로 투자를 이전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투자 감소로 경제가 위축되어 실업자가 늘어나고, 서민의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스웨덴의 룬드 대학 경제학자 아사한손 교수는 "24억 4000만원을 가진 사람이 아이슬란드나 스웨덴에 살면 취리히에 사는 것 보다 세금을 10배나 더 낸다"면서 부유세부과로 얻어지는 재정 수입보다 경제활동에 따른 침체가 더 큰 문제라며 지적했다.

세 번째로 부유세 도입보다는 공공사회지출을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현재 부유세도입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전문가 18명중 16명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 이들은 부유세 도입이 실현하기 어려울뿐더러 설사 도입한다 해도 국제공조가 어려워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만약 공공사회지출이 이상적으로 계획되어 있다면 부유세도입은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한국은 국내 총 생산에서 공공사회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정도에 불과해 OECD의 평균, 약 22%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또 사회지출이 소득 불균형과 상대적 빈곤해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부유세 도입보단 차라리 좀더 현실적인 공공사회지출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 노인 연령 상향 필요 vs 노인 빈곤 해소가 우선

○ 이슈 배경

노인의 연령기준을 놓고 현재 65 세를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기준을 올릴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현행 65 세인 노인 복지제도의

기준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노인 복지제도의 기준 연령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노인으로 규정되는 나이도 올라가게 돼 '노인 기준 연령이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은 지난 2 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현행 60 세에서 65 세로 상향조정하면서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소송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관한 사회적 논의도 속도가 붙게 되었다.

1981 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될 당시만 해도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의 4%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2017 년 14%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노인 인구 비중이 7%일 경우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면 고령 사회,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이다. 우리나라는 2000 년도에 고령화 사회(7%)가 되었으며 17 년 만인 2017 년도에 14.2%로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2060 년, 41% 예상)

▶노인기준 연령

"노인"을 규정하는 기준 나이는 만 65 세로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을 짰 1964 년에 도입해 2017 년 현재 52 년째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2016 년 말 '2017 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노인 기준을 재정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노인 기준 연령 조정에 나서는 것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생산가능인구를 15~64 세로 보지만 실제로는 더 늦게까지 일한다"며 "현행 노인 연령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노동시장 실제 은퇴 연령은 2014 년 기준으로 남자는 72.9 세, 여성은 70.6 세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참고자료:네이버 지식백과-한경경제용어사전>

○ 찬성측 논리

- 노인연령은 노인복지법상 66.1 세이던 수명이 1981 년에 정해졌다. 그러나 평균 기대수명이 2017 년 기준 82.6 세로 36 년전보다 16.5 세늘어났다.
- 지하철요금,기초연금,장기요양보험의 돌봄서비스 등의 복지 혜택은 만 65 세가 기준이다.
- 노인연령기준을 그대로 두면 중장년층이 많이 부담하는 세금에서 노인복지에 투입되는 비율이 올라간다.
- 대한노인회도 노인 기준 연령을 70 세로 올리는 문제를 공론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2015 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 세 이상을 대상으로 '적정한 노인 연령'을 질문한 결과 78.3%가 '70 세 이상'이라고 답했다.
- 노인연령을 올리고 노인 일자리 연금, 복지혜택 등에 대한 준비를 점진적으로 해 나간다면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가능성 보인다.

○ 반대측 논리

-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46.7%(2016 년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평균(14%)를 훨씬 웃도는 1 위이다.
- 2016 년 노인기준 자살률도 인구 10 만면당 53.3 명으로 OECD 평균(18.4 명)의 2.8 배에 이른다.
- 노인 일자리도 대부분 단순노무직, 일용직 등으로 질이 낮아 노후 소득을 마련할 여지가 부족하다
- 정부가 노인빈곤해결을 위해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의료혜택을 늘리고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다. 이와 같이 노인복지가 빈약한데 노인연령을 상향시키게 되면 65 세~69 세에 해당하는 180 만명 정도가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된다.

○ 대안 - 신체.사회정책적 연령 구분

- 전문가 의견 -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려면 노인 연령 상향은 단지 시기의 문제일 뿐이기에 신체 연령과 사회정책적 연령을 구분하자.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노인연령 상향 취지는 생물학적 기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혜택과 같은 사회정책적 기준이 높아지는 것은 우려가 높다", "노인 연령에 대한 대응을 이원화 해 신체연령 기준은 높이고 일자리를 확대해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새롭게 하되, 소득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각종 복지 혜택과 연계되는 사회정책적 기준은 개별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
- 노인 연령 상향이 당장 힘들다면 현실적인 해법으로 복지 혜택 별 기준을 재정비하자. 가령,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우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거나 무료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등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서울시는 65 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지난해 4,140 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일본은 70 세 이상 노인 중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하고, 프랑스는 65 세 이상 소득 하위계층에 출퇴근 시간 외에 50% 할인 해준다.

<자료 : 한국일보, 2.04 / BBS 불교방송, 4.12>